

『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적극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및 공익신고 우수기업 선정조항 신설
 - 환경조성사업 :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사업
 - 공익신고 우수기업 : 공익신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사규 등에 도입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기업
-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함
 - 이전 조례의 ‘위원회를 둘 수 있다’를 ‘둔다’로 함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동법 시행령
「구미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, 기업지원과, 세정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으로 지정·지원하고,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의 선정과 우대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본 조례의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관련 자체 규정 정비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으로,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공익침해 취약분야에 대해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구축을 지원하고, 공익신고를 권장하는 기업을 우대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